

기타 주요경영사항

1. 제출사유 : 정관 일부 변경

2. 주요내용 : 개정 지배구조법령 시행('24.7.3일) 에 따라 정관 제49조의1 [이사회의 권한]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 49 조의 1 [이사회의 권한] 이사회의 심의·의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해산·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⑥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대주주·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⑧ 기타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 	<p>제 49 조의 1 [이사회의 권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이사회의 심의·의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. 해산·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.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.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.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8. 대주주·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9. 기타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 ② 이사회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지배구조법”)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

3. 결정(발생)일자 : 2025.03.20

4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